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7월 2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3. 정정 내용 :

- 투자대상 모펀드 및 투자한도 변경, 투자대상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 등

4.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신탁 명칭	삼성스트라이크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	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[주식]
제2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)	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제3조 (정의)	4. “ 투자신탁 ” 이라 함은 삼성스트라이크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을 말한다.	4. “ 투자신탁 ” 이라 함은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[주식]을 말한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6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③집합투자업자는__ 위탁집합투자업자 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③집합투자업자는__ 업무수탁자 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7조 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__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1.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__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1. 제2조제2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
부칙	추 가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. (투자대상 모펀드 및 투자한도 변경, 투자대상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 등)